

◎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-0130호

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를 위하여 「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4월 03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이 개정(법률 제18591호, 2021. 12. 21. 공포, 2023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물납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2조)

- 물납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물납심의위원회를 설치

나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)

-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,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, 회의 소집 및 개최,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3. 의견제출

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참조: 문화기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제출

-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정안	수정안	의견

나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우편번호 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
- 전자우편: park868686@korea.kr
- 팩스: 044-203-3472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www.mcst.go.kr) 자료공간-법령자료-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(전화 044-203-2642, 팩스 044-203-34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